

**[사 건 명] 행심 2015-35**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중학교 학생으로 같은 반 ●●●에 대한 강요, 협박으로 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5. 9.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학교에서의 봉사 3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5. 10. 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5. 10.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에 대한 소문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나자고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없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 것 일뿐, 진술서를 보여줄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학교폭력을 가한 적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내용의 부분적 공개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피해학생들의 의견만을 편향적으로 반영하여 공명정대함을 잃은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과 만나려는 의도가 친구들과의 화해와 소문을 알리려는 좋은 의도였다고는 하나, 단 한 번도 화해를 시도한 바는 없고, 청구인은 만남을 기피하는 ●●●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으므로 이는 학교폭력의 일환인 강요에 해당하며, 청구인을 포함한 ●●● 등이 ●●●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옆에 서서 위협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을 비롯한 다수학생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진술서를 작성한 상대학생들과 의도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면서 진술서의 내용을 알려줄 것을 강요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부분 공개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으며, 회의록 공개과정이 적법이든 위법이든 이 사건 처분의 조치와는 무관한 문제인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 등(●●●을 포함함, 이하 ‘청구인 등’이라고 한다)은 2015. 9. 10. ●●●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 이를 거절하자, ●●●의 집으로 가서 할머니를 만났다.
- 2) 청구인 등은 2015. 9. 11. ●●●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강요하였고, 이에 ●●●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음 날 학교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 3) 청구인 등은 2015. 9. 12. 경 ●●●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오라고 하였고, ●●●이 청구인을 만나러 가자, 청구인과 같이 동행한 ●●●은 ●●●에게 약속을 미룬 이유를 따졌으며, ●●●을 밀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위협을 가하는 현장에 청구인도 같이 있었다.
- 4) 청구인 등은 2015. 9. 15. 경 ♀♀, ♀♀♀에게 진술서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욕을 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

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에 대한 소문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나자고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없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 것 일뿐, 진술서를 보여줄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의도와는 달리 화해를 시켜야 하는 당사자인 ▼▼▼과 함께 ○○○을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 등은 ○○○에게 계속 만남을 강요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2015. 9. 12. ○○○을 만나서 공동으로 ○○○에게 위협을 가한 적이 있고, 청구인 등은 2015. 9. 15. 에도 ♡♡, ♡♡♡에게도 진술서의 내용을 알려주기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내용의 부분적 공개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피해학생들의 의견만을 편향적으로 반영하여 공명정대함을 잃은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피청구인의 회의내용의 부분적 공개범위는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를 보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의 불복에 대하여는 기재하고 있지 않는 만큼,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하자는 이 사건 처분과 연관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치위원회의 회의가 피해자 측의 의견만을 편중하여 진행되었다고 불증거가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이 사건 학교봉사 3일은 청구인의 행위의 심각성, 청구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절한 처분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상의 강요, 협박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